

제 371호
(2020. 09. 30 발행)

2020 회원사CEO

업무
보고

업무보고 [제 371호]

CONTENTS

주요업무 및 업계어로 해소 추진 현황	02
각종 회의 개최 및 참가	13
건설법령 개정 동향	17
2020년 7·8·9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32
건설업체 현황	33
회원사 무료 상담서비스 안내	37



「주요업무 및 업계어로 해소 추진 현황」

가. 서울시 적정공사비 산정체계 개선 추진

■ 추진 경위

- 우리사회는 ‘서울지역 종합건설업계 현안사항 및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적정 공사비반영 의견 제출(19.5.27)
- 이에, 서울시는 ‘적정공사비 산정체계 개선 관련 T/F’를 구성하여 공사비 산정 및 관리 실태개선 등을 추진
 - 우리사회는 상기 T/F 1차 회의(20.9.25)에 참여

■ 회의 내용

- 공사비 산정 및 관리 체계 개선
 - 서울형 표준품셈 확대
 - 서울시 공통 설계기준 및 표준 설계단가표 작성
 - 안전관리비 설계반영 지침서 마련
- 불공정 관행 개선
 - 공사비 부당 삭감, 추가비용 미지급, 불공정 규정으로 인한 공사비 미지급 개선
 -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간접비 지급운영 요령 개정 등

-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품질관리 및 검증 절차 제도 개선
 - 가격평가 → 기술평가 중심 입찰제도의 개선
- 공사 규모별, 유형별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 국내외 공사기간 산정기준 현황 분석 및 중·단기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마련

■ 향후 계획

- 향후 상기 T/F 정기회의에 참석 업계의견 건의 추진

나. 서울시 ‘건설현장 좋은 일자리 만들기’ 건의

- 건의처 : 서울시(건설혁신과,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의일자 : '20. 10. 13

■ 추진 경위

- 우리사회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방문하여, 적정 ‘공사비 보장을 위한 제도’ 등을 논의(5.15)
- 이에,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건설현장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추진 및 이와 관련하여 우리사회에 제도개선 과제요청(9.10)
 - ※ 향후 유관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예정

■ 건의사항

-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적정임금 보장

- 소규모 건축공사 발주시 낙찰률 적용 대상에서 노무비 제외 등 적정임금 지급 방안 마련
- 입찰시 보유한 기능인력을 준공시까지 투입·보유한 경우 고용장려금 및 교육·훈련비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 서울형 건설공사 적정공기 산정기준 마련
 - 서울지역 건설공사에 특화된 '서울형 건설공사 적정공기 산정기준' 수립
 - 지방계약법 상 '입찰공고 시 공사기간 산정근거 명시' 행안부 건의
 - ※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적정공기 산정근거 공개 규정 마련
- 공사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한 적정공사비 산정 기준 마련
 - 낙찰차액 또는 지방재정법상 예비비제도를 활용한 공사비 충당방안 마련
 - 예산부족으로 공사 지체시, 시공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준공 후, 조달이자를 포함한 기성대가 지급 방안 마련
 - 공사기획단계부터 충분한 예산확보 후 공사 발주를 원칙으로 하는 서울시 '계속비공사 발주기준' 수립
- 서울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적지원 인프라 적극 활용
 - 서울 소재 스마트 건설 관련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Start-up) 기업 지원책 마련 필요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무공동도급 발주 건의

- 건의처 : 서초구(건축과 재무과) 및 서울시(건설혁신과)
- 건의일자 : '20. 8. 21

■ 추진 경위

- 「양재공영주차장 신축공사(건축,기계)」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가 미적용되어 발주(8.19)됨에 따라 서울지역 건설업체 수주물량 감소 우려

■ 건의사항

- 서울지역 건설사업자 수주물량 확보 및 보호·육성을 위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적극 반영
-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사업자의 최소시공참여 비율(49%) 보장

■ 건의결과

- 서초구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하여 재공고(8.26)



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반영 건의

- 건의처 : 서울시(예산담당관)
서울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교통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건의일자 : '20. 9. 2

■ 주요 건의사항

- 추진 타당성이 검증되었으나 장기 지연된 사업의 '21년도 예산 편성 및 지방중기재정계획 반영
- '21년도 생활SOC 확충 예산 편성
- 서울시 기지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배정 및 낙후지역의 신규 도시재생사업 추가 선정
- 서울형 스마트 건설사업 적극 추진, 지원제도 발굴 및 스마트건설 관련 '21년도 예산 대폭 증액 편성

마. 공공시설물 부분인수 및 사용 활성화 건의(협조요청)

- 건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25개 구청
- 협조요청 : 서울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교통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건의일자 : '20. 9. 15

■ 추진 경위

- 일부 발주기관에서 부분 준공에 소극적이거나 부분인수·사용시에도 전체 목적물 완공 전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기산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 지속 발생

■ 주요 건의사항

- 공공시설물 부분인수·사용 활성화 요망
 - 현행 법령 및 관련예규에서 부분인수·사용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일선 사업부서에서 동 사항 적극 활용
- 시설물 부분인수·사용 시, 해당 인수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시작하도록 지방계약법령 및 계약조건 준수

■ 추진 결과

-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산하 부서에 우리사회 건의내용을 담은 규정준수 철저 공문 시행(9.16)



바.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 발주관련 건의

- 건의처 : 서울시(교량안전과,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의일자 : '20. 9. 17

■ 추진 경위

- 성산대교 복단 성능개선공사 발주 관련 건의('17.2.9)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향후 본교 등 성능개선공사는 종합공사업 건설공사로 발주할 계획임”을 회신(2.17)
-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 발주가 임박함에 따라 당초 회신내용대로 발주함과 아울러 서울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선제적 조치 필요

■ 건의사항

- 발주예정인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토목공사업으로,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적용 및 최소 지분 49% 반영

사.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건의

- 건의처 : 서울시(건설혁신과)
- 건의일자 : '20. 8. 12

■ 추진 경위

-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상 건설공사원가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누락되거나 현장과 맞지않은 비용산정 규정으로 인해 적정공사비 확보가 어려움

- 특히, 장비를 이용한 현장내 자재운반비 및 안전관리비 같은 안전과 관련된 기준이 미비하여 경영악화는 물론 잠재적인 안전사고·중대재해 발생 우려

■ 건의사항

- 안전관리비 산정기준 구체화
 - 현행 실비반영으로 되어있는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을 효율화하여 적정비용 반영
- 현장내 자재운반비 적정 반영
 - 공사현장 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장비를 이용한 자재운반 비용 반영
- 유로폼 재료비 현실화추진
 - 실제 재료수급 방식인 임대료 적용 및 서울형 품셈 개정을 통한 합리적 원가 산정
- 시공측량비 적정 계상
 - 시공전·시공중·준공 측량 실제 소요금액에 따른 적정계상 및 예가산정시 적정반영 근거규정 마련

■ 건의결과

- 서울시 '적정공사비 산정체계 개선 관련 TF회의' 세부추진계획에 안전관리비 적정반영 및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공종 개선사항 반영(9.25)

아. 건설업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 입찰 사전단속 안내(7.20)

- 서울시가 추진하는 입찰 사전단속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입찰시 예상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회원사 안내

서울시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전단속 추진계획 요약

- 조사 기간 : '20년 7월~12월말
 - 조사 대상 : 지역제한경쟁(서울등록업체) 입찰 적격심사 대상업체 (1,2,3순위)
 - 본청 및 도로사업소 대상(종합건설공사 100억원 이하, 전문건설공사 10억원 이하)
 - 조사방법 및 내용
 - 자료 준비 요청 및 3개 업체 동시 점검
 - 적격심사 대상업체 등록기준(사무실, 기술능력, 자본금 등) 및 재무비율(자산·부채 부당상계) 서류 및 현장 확인
- 이와 관련, 정부는 예타면제사업에 대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 관련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페이퍼컴퍼니 일제단속 추진
 - 또한,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10.7)도급계약 체결전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의무화

자. 공공 건설현장 수해 피해 관련 대응방안 등 안내(8.14)

- 건설업체의 수해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에 적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조치사항 등을 안내

■ 공기연장 추가비용 청구

(관련규정) 기재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행안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2

- 태풍·홍수 등 불가항력에 따른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함
- 연장신청 승인기간은 지체상금 부과가 면제되고, 간접노무비 등 추가비용을 실비로 산정, 계약금액 조정신청가능
 ※ 신청기한 :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 건설현장 피해금액 청구(계약금액 조정 및 손해보상청구)

(관련규정) 기재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1조(일반적 손해), 제32조(불가항력)
 행안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 태풍·홍수 등 불가항력(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으로 인한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 계약담당공무원에 피해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금액의 변경·손해액 부담 등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함
 - * 공사목적물의 경우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이 청구대상이 되며, 기성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동영상 등)에 의해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경우가 대상이 됨
- 다만, 손해보험 가입공사는 손해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발주기관이 손해액을 부담

차. 건설공사대장 확인 및 통보 안내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하수급인 미기재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회원사*에 억울하게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사항 통보

* 해당업체 명단 협조 : 국토부, KISCON

※ 건설공사대장 확인방법

- ① 건설산업정보센터(<http://www.kiscon.net>) 접속
- ② 주요서비스 '건설공사대장전자통보바로가기' 클릭
- ③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건설업체로 로그인
- ④ 건설공사 대장관리 화면 - '신규작성' 또는 '조회&변경통보'

위반혐의사항	건설업체가 조치할 사항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건설공사대장 신규 통보
건설공사대장에 하수급인 미기재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 계약사항 입력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보증서 발급시 발급정보 입력, 면제사유 해당시 증빙서류 첨부

〈 월별 건설공사대장 확인 및 통보업체수 및 건수 〉

구분	7월		8월		9월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82	241	5	5	8	8
건설공사대장에 하수급인 미기재	31	54	17	33	24	35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35	52	30	35	32	46
합계(중복 제외)	134	347	47	73	57	89

「 각종 회의 개최 및 참가 」

가. 「회원사 계약업무 담당자협의회」 제1차 회의 개최

- 일시
 - 중소기업 : '20. 7. 2(목) 11:00~12:00
 - 대기업 : '20. 7. 9(목) 11:00~12:00
 - 참석자 : 총 15명
 - 중소기업 : 9인
 - 대기업 : 6인
 - 회의내용
 - 착공 전 유사한 심의 중복 개선
 - 상위 10개사간 공동도급 금지 규제개선
 -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적정공사비 지급
 - 지방공기업 계약 관련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대상기관 확대
 - 코로나사태로 인한 보증수수료 할인
 - 회의결과
 - 건축법 및 지자체 건축조례 등 관계 법규에 따른 건축심의대상 통합 또는 간소화에 대해 본회와 협의하여 건의 예정
 - 조달청 중심제의 동점자처리기준 적용사례 및 1등급 대상 시범사업 동향파악 등을 통해 제도개선 지속 추진
- ※ 조달청은 협회건의를 반영하여 중심제 동점자처리기준 시범사업* 발주(5.15)한 상황
* 안동 외룡-봉화 법전 국도건설공사(2등급, 7.8 개찰)

- 공공건설공사 발주 시 보증수수료 할인 적용 이행 관련 시정건의 및 지속 모니터링 예정
- ※ 국가계약법 시행령·계약예규의 경우 제·개정 되었으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경우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5.25~6.1) 후 개정 중에 있음

나. 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일시
 - '20. 7. 24(금) 11:30~13:00
- 참석자 : 총 16명
 - 회장, 정책위원회 위원 등
- 회의내용
 - 정책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 위촉 및 상견례
 - 건설산업 혁신방안 관련 업역개편 동향
 - 서울지역 공공공사물량 확보 추진
 - 서울시 적정공사비 지원제도 마련 추진
 - 건설업 입찰사전단속 제도 현황 모니터링
 - 서울시 의회 하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 구성 대응
 - 회원사 실무교육 추진 현황 등

다. 건축적산 실무교육

- 일시 : '20. 7. 22(수) 13:00~17:00
- 장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우리시회 회원사 임직원 50여명
- 강사 : 현동명 (주)컨코스트 대표
- 교육내용

챕터	교육내용
1-1	프로그램을 통한 구조 산출의 이해
1-2	구조 산출후 집계, 분석 방법
2-1	프로그램을 통한 마감 산출의 이해
2-2	마감 산출후 집계, 분석방법
3-1	내역서를 통한 공사비 및 수량의 검토방법
3-2	설계변경의 이해와 접근방법
4-1	공무원가를 개선하는 방법과 건설클레임
4-2	원가절감 향상 사례 및 클레임 사례



라. 노무관리 및 4대보험 실무교육

- 일시 : '20. 8. 12(수) 13:00~17:00
- 장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우리시회 회원사 임직원 100여명
- 강사 : 노무그룹 지노 김동환 대표 공인노무사
- 교육내용

시간	구분	교육내용
13:00 ~ 15:00	노무 관리	최근 노동관련 법률 및 제도 개정내용 해설 건설현장 인사 노무 실무 쟁점별 해설 • 근로계약관리 • 임금관리(최저임금·고용개선지원비 등) • 근로시간·휴일·휴가 관리 • 퇴직 관리 •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 실무상 체크포인트
15:00 ~ 17:00	4대 보험	• 건설업 확정 및 고용·산재 정산 실무 • 건설업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실무 안내



「건설법령 개정 동향」

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20.9.8)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①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예외 규정

- 지급보증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구체화

-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공사

②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 확대

- 공공공사, 민간투자사업 등

- (종전)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 (개정)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민간공사

- (종전)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
- (개정)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③ 민간 대금지급보증 미이행 발주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① 민간공사 대금지급 보증금액 및 지급보증 기한 설정

-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 공사기간이 4개월 초과인 경우로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기성금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text{보증금액} = \frac{\text{도급금액} - \text{계약상 선금금}}{\text{공사기간(월)}} \times 4$$

※ 보증금액 = 도급금액에서 선금금을 제외한 금액

- 공사기간이 4개월 초과인 경우로서 기성금 지급주기가 2개월 초과인 경우

$$\text{보증금액} = \frac{\text{도급금액} - \text{계약상 선금금}}{\text{공사기간(월)}} \times \frac{\text{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text{대가의 지급주기(월수)}} \times 2$$

- 공사대금 지급보증은 수급인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

②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금액 조정 (제34조의4)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대응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액 축소

-(종전)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10

→ (개정)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5

■ 시행일

-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관련 개정규정 : '20. 11. 27
- 퇴직공제부금 가입 대상공사 확대 : '20. 9. 8
 ※ 공포한 날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또는 도급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금액 조정 : '20. 9. 8

※ 시행일 전에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나.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20.9.8)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20.10.8)

- 건설업 교육 방법 확대
 -(종전) 강의, 시청각교육 등
 → (개정) 강의, 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이나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
- 부대공사 인정기준* 명시 및 부대공사의 범위·기준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국토부 고시 근거 마련

주요 내용

1.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 및 연계성이 인정될 것
2. 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 일괄하도급 예외사유 변경

-(종전) 전문공사 업종별로 분할하여 2인 이상의 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일괄하도급 가능

→ (개정) 2인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일괄하도급 가능

- 상호시장 진출시 예외적 하도급 허용범위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시공이 원칙인 바, 예외적으로 하도급 가능한 범위 설정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 중 20% 이내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로서 신기술공사, 특허공사, 교량의 철구조물 공사, 특정 건설기계 사용 공사 등을 하도급 하는 경우로 한정

•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의무사용 확대

-의무사용 발주자 : (종전)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개정) 기타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추가

-의무사용 예외 : (종전)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

→ (개정)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공사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자료 요청 및 위탁근거 마련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 가족친화 인증,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평가 자료 요청 및 고용평가 기관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

• 불법외국인력 고용 건설사업자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 설정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련 법에 따른 제재를 받은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설정 : (1차) 1개월 (2차) 2개월

• 행정처분 기한 설정

-행정처분을 위임받은 처분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령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함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20.10.7)

• 업역개편에 따른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 폐지

※ 공공공사 '21.1.1, 민간공사 '22.1.1부터 시행

• 건설업등록 행정정보이용 사무 확대

- (종전) 건설업등록 신청인은 기술인력보유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함

→ (개정) 신청인은 기술인력보유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기술인력보유현황에 대한 고용보험가입증명서를 확인해야 함

※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고용보험가입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함

•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 가능한 전문공사의 범위

-종합업체가 등록된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작물이나 시설물 등의 일부에 관한 건설공사 또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

•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시 구비요건 및 절차

-상대업종 등록기준 보유 확인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및 발주자의 확인의무 명시

-건설공사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국토부 고시) 근거 마련

〈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시 등록기준 구비 확인 서류 〉

등록기준	전문 → 종합공사	종합 → 전문공사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서	•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서
자본금	• (법인)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개인)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증빙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
	-	• 자기소유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 임대차 :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직접시공실적 증명서류* 제출 및 직접시공실적 공시 제도 도입
* 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의 건설공사직접시공분 기성실적 증명서. 다만,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직접시공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국토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한 경우는 제외
- 시공능력평가지 건설공사 실적 인정범위

주요 내용

- ① 종합업체가 종합 또는 전문공사를 하도급 한 경우, 하도급 한 실적의 전부를 수급인의 실적으로 인정
※ 종합업체에게 하도급* 한 경우에도 전부 인정
*1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전문업체에게만 하도급 가능
- ② 종합 또는 전문업체가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상대시장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경우, 동 실적 금액은 해당 공사를 시공한 종합 또는 전문 업체의 실적에 합산
- ③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재하도급 한 경우에는 재하도급 한 실적의 1/2만을 하수급인의 실적으로 인정
- ④ 전문공사는 직접시공이 원칙이므로 이를 예외적으로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 한 실적의 1/2만을 수급인의 실적으로 인정
- ⑤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직접시공이 원칙이므로 예외적으로 하도급 한 경우에는 하도급 한 실적의 1/2만을 수급인의 실적으로 인정
- ⑥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의 실적 인정방법

- 하도급 통보시 하수급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하도급계약이 공동도급 형태로 체결된 경우, 하도급계약 통보시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시 공동수급협정서 첨부
- 대여대금 보호대상 가설기자재 명시
- 비계 : 강관비계, 조립형비계, 이동식비계, 작업발판 및 조립식 안전난간

- 동바리 : 파이프 서포트, 적 서포트, 조립형 동바리 및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 거푸집 : 강재틀 합판 거푸집

-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상대업종 실적인정 특례 마련

종합실적 → 전문실적	전문실적 → 종합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공사 실적 중 2/3*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 * '18년 기준, 전문시장 규모가 종합시장 규모의 2/3 수준이므로 상호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하는 취지 반영 • 전문공사 업종별로 구분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공사 실적 전부 • 종합공사 업종별로 구분 인정

※ 실적 인정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 인정받은 실적의 관리 및 건설공사 실적을 업종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시행일 : '20.10.8 (별도 시행일 존재하는 경우 외)

- 건설업 교육방법 확대 : '20.10.8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자료 요청 및 위탁근거 마련 : '20.10.8
- 불법 외국인력 고용시 하도급 참여제한 : '21.12.19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사용 공공공사 발주자 확대 : '20.10.8
※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소규모공사 : '21.1.1
※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
- 직접시공실적 증명서류 제출 및 직접시공실적 공시 : '20.10.7
※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건설공사실적 및 해당 공사실적에 대한 시공능력공시부터 적용
- 하도급계약 통보시 하수급인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20.10.7
※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

- 건설공사 시공자격 적용방법, 부대공사 적용기준, 소규모복합공사 폐지, 종합업체가 도급 가능한 전문공사 범위,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시 구비요건 및 절차, 시공능력평가시 건설공사 실적 인정 : 공공공사 '21.1.1, 민간공사 '22.1.1
 ※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
-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시 예외적 하도급 허용: 공공공사 '21.1.1, 민간공사 '22.1.1
 ※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를 한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 적용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20.9.8)

■ 주요내용

-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도급을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 연면적이 1000㎡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른 대안입찰, 일괄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의 경우
 -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도급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행일 : '20.9.10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20.7.30)

■ 주요 내용

- 건설기술인 기본교육 통합 및 전문교육 체계 개편

구분	종 전		개 정			
	교육시간	이수시기	교육시간	이수시기		
기본교육	설계 시공	35시간	업무 수행 전	35시간 (설계·시공, 품질관리 등 분야 무관)	업무 수행 전	
	품질 관리	35시간	업무 수행 전			
전문교육	설계 시공	35시간	최초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최초교육	35시간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 수행 전
		35시간	현장대리인, 책임 기술인 업무수행 기간이 3년이 지나기 전	계속교육	35시간	현장대리인, 책임 기술인 업무수행 기간이 3년이 지나기 전
		35시간	현재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승급교육	35시간	현재보다 높은 기술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품질 관리	35시간	최초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최초교육	35시간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 수행 전
		35시간	업무수행기간이 3년이 되는 날의 6개월 전후	계속교육	35시간	업무수행기간이 3년이 지나기 전
		35시간	현재보다 높은 기술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승급교육	35시간	현재보다 높은 기술 등급을 받으려는 경우

※ 계속교육의 경우, 동일 분야의 승급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 이수일 기준으로 업무수행기간을 계산

■ 시행일 : '20.8.1

마.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개정 · 공포 ('20.8.27)

■ 주요내용

-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품질 및 시공상태 확인의무 및 재시공 등 시정조치 권한 부여
-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이행에 대한 연대 또는 분담 책임 범위를 안전 · 품질 분야로 확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분담이행, 주계약자)상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연대 또는 분담책임 범위를 안전 · 품질 분야로 확대

■ 시행일 : '20. 8. 27

바.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개정 ('20.9.24)

■ 주요내용

-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항목(가점) 확대
 - 최근 3년간 사망만인율 기중평균이 평균 이하인 경우 가점
- 입찰공고시 공사기간 산정근거 명시
 - 공사기간 산정근거 열람 및 교부 의무화
 -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설계서에 포함
 - ※ 단, 터키 · 대안 · 기술제한 공사 및 현장설명서 작성하는 공사 제외
-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관리책임 범위 합리화
 - (현행) 모든 책임 → (개정) 통상적인 관리책임*
 - * 근로자의 관리 · 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 면제
- 하자담보책임 기간 특약의 상한기간 등 규정 마련

- 특약조건 : ①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계약상대자와 협의

- 상한기간 : 해당계약 책임기간의 최대 2배 이내

- 해당 특약 설정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 시행일

• '20.12.24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단, 적격심사기준 개정사항(신인도)은 '21.1.1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

■ 재난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개정 주요 내용 ('20.7.14)

① 수의계약 관련

- 긴급 수의계약 대상 추가
 -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포함
- 한시적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 (행안부 고시에 따라 '20.12.31까지)
 - 종합공사 : (현행) 추정가격 2억원 → (개정) 4억원 이하
 - 전문공사 : (현행) 추정가격 1억원 → (개정) 2억원 이하
- 한시적 유찰 수의계약 요건완화 (행안부 고시에 따라 '20.12.31까지)
 - 1회 유찰시 재공고입찰 없이 수의계약 가능

② 적정공사비 관련

- 합리적 예정가격 산정근거 마련
 - 입찰공고에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책정기준 및 제비율 명시

③ 한시적 입찰부담 완화(행안부 고시에 따라 '20.12.31까지)

- 입찰보증금 인하 : (현행) 입찰금액의 5% → (개정) 2.5%
- 계약보증금 인하 : (현행) 입찰금액의 15% → (개정) 7.5%
- 공사이행보증서 인하
 - (현행) 입찰금액의 40%(낙찰률 70% 미만시 50%)
 - (개정) 20%(낙찰률 70% 미만시 30%)

④ 한시적 검사·대가지급 기한 단축(행안부 고시에 따라 '20.12.31까지)

- 검사기한 : (현행) 이행완료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 (개정) 7일
- 대금지급기한 : (현행) 청구받은 날부터 5일 → (개정) 3일

⑤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점 개선

- 공사목적물 부분인수·사용시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
 - 계약목적물 일부분을 먼저 인수·사용시 해당부분은 인수·사용일부터 하자기간 산정

■ 종합평가 낙찰자기준 변경('20.8.31)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종합평가 낙찰자 기준변경
 - (종전) 재해율 → (현행)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 : '20.9.1.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개정 ('20.7.10)

■ 주요 내용

- (선금) 시스템을 통한 선금 사용, 발주자의 선금 사용내역 확인 등 선금 관련 발주자·건설사의 처리방식 명시
 - 발주자는 선금에 노무비를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아야 함
 - 선금으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사의 선금 사용내역을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
 - * 발주자는 건설사에 선금을 지급한 경우 선금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며 해당공사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장비대금) 건설기계 대금 청구 시 대여대금과 운전자 급여를 각각 구분하여 청구 내역을 작성
- (노무비) 하도급 계약을 맺은 자재업체의 근로자 중 현장설치를 위해 고용된 근로자 임금은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해 지급



윤리·기획·정책·사회공헌·자문 위원회 위원 선출

• 원활한 시회 운영을 위한 각급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출(7.15)

위원회명	위원장	부위원장	기능
윤리위원회 (15인)	거현산업(주) 박기욱	명남종합건설(주) 박남재	회원 징계관련 의결
기획위원회 (17인)	영동건설(주) 손병희	유호산업개발(주) 유정환	시회 사업계획· 예산안 심의
정책위원회 (16인)	(주)현창산업 김갑동	큰빛종합건설(주) 김현철	정책관련 자문
사회공헌위원회 (13인)	광명종합건설(주) 장경래	(주)특수건설 김중헌	사회공헌사업 추진
자문위원회 (16인)	(주)금강주택 김충재	이평종합건설(주) 박인준	시회운영 관련 자문

• 회의개최

- 위원장단 회의 : 7.15(수) 12:00, 한우리한정식
- 정책위원회 1차 회의 : 7.24(금) 11:30, 건설회관 3층 소회의실
- 윤리위원회 1차 회의 : 8.6(목) 11:30, 건설회관 3층 소회의실
- 사회공헌위원회 1차 회의 : 8.10(월) 11:30,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
- 기획위원회 1차 회의 : 8.14(금) 11:30,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

선출직 대표회원 간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7.28(화) 12:00, 한우리본점
- 참석자 : 회장단 및 선출직 대표회원 등
- 회의내용
 - 각 위원회 기능 및 운영계획 설명
 - 우리시회 주요일정 및 현안사항 등

2020 대표회원 워크숍 개최

- 일시 및 장소 : 8.19(수) 12:00, 한성 CC
- 참석자 : 서울시회 제4대 대표회원 등



「2020년 7·8·9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사,건수)

업체수	발급서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159	807	934	151	1,892

●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지분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서	영업기간 확인서	공정관리 조직	10년간 동일 공종 실적	계
190	210	213	14	3	177	807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건)

건설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발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부정 당	산재 예방	계
90	5	86	82	81	79	3	132	3	140	110	123	934

다. 기타서류

(단위:건)

개별	건설공사실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인	회원 확인	계
	자기	총괄표	소계						
32	2	3	37	0	0	0	113	1	151

「건설업체 현황」

●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20.09.30현재)

구분	업체수						등록수					
	계	일반					계	일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원	9,137	2,946	2,077	3,780	38	296	11,253	2,946	2,078	4,517	367	1,350
비회원	4,354	158	634	3,437	36	89	4,515	158	634	3,547	46	125
계	13,491	3,104	2,711	7,217	74	385	15,768	3,104	2,712	8,064	413	1,475

●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20.09.30현재)

구분	업체수						등록수					
	계	일반					계	일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원	1,400	222	68	1,049	11	50	1,560	222	68	1,068	64	138
비회원	553	18	14	487	12	49	563	18	14	489	16	26
계	1,953	240	82	1,536	23	72	2,123	240	82	1,557	80	164

● 전입현황

연번	업종	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입일자(신고일자)
1	토목	160665	(주)티엠건설	이다연	전남	2020-06-24(2020-07-08)
2	토목	110643	(주)화산	임종명	강원	2020-07-20(2020-07-27)

3	건축	010644	(주)제이엔에이치종합건설	김지누	경기	2020-07-27(2020-07-30)
4	건축	020815	지구종합건설(주)	강현신	전북	2020-06-12(2020-08-10)
5	건축	103264	(주)에이더스종합건설	노진호	경기	2020-08-27(2020-09-04)
6	건축	021621	(주)삼인엔지니어링종합건설	유근배	부산	2020-09-07(2020-09-11)
7	건축	012820	(주)유화종합건설	김만석	경기	2020-09-21(2020-09-25)

● 전출현황

연번	업종	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신고일자)
1	건축	013617	(주)지평종합건설	고정윤	충남	2020-06-12(2020-07-01)
2	건축	010914	대국종합건설(주)	조맹순	전남	2020-06-05(2020-07-01)
3	건축	103006	엠에스건설(주)	이중혁	경기	2020-06-18(2020-07-02)
4	건축	014579	(주)가인종합건설	이미순	제주	2020-06-26(2020-07-06)
5	건축	014658	(주)원케이종합건설	김영철	경기	2020-06-17(2020-07-07)
6	건축	013517	창재종합건설(주)	양성윤	경기	2020-07-01(2020-07-09)
7	건축	130329	(주)청룡건설	박석홍	세종	2020-03-13(2020-07-15)
8	건축	014119	(주)수영종합건설	김영인 이미영	경기	2020-07-03(2020-07-16)
9	건축	014678	(주)호수종합건설	조철회	대전	2020-07-14(2020-07-21)
10	건축	014547	금상종합건설(주)	온재원	경기	2020-07-03(2020-07-27)
11	건축	014708	(주)디엠씨종합건설	이승진	인천	2020-07-27(2020-07-30)
12	건축	014706	(주)삼인종합건설	김준협	경기	2020-07-23(2020-08-05)
13	건축	014622	유니크종합건설(주)	김태준	경기	2020-07-24(2020-08-05)

14	건축	014694	(주)해강종합건축	이국천	경남	2020-07-28(2020-08-06)
15	토목	010608	서익종합건설(주)	이광우	충북	2020-08-10(2020-08-21)
16	건축	014155	여산종합건설(주)	김주연	경기	2020-07-21(2020-08-24)
17	건축	040769	(주)세종씨앤디	신마리	강원	2020-08-07(2020-08-25)
18	건축	011915	예림종합건설(주)	이익석	경기	2020-07-27(2020-08-27)
19	건축	014716	(주)디에스종합건설	권태봉	경기	2020-08-12(2020-08-28)
20	건축	014731	만흥종합건설(주)	김태현	경기	2020-08-21(2020-08-31)
21	건축	014736	(주)대한종합건설산업	조원준	전북	2020-08-25(2020-09-01)
22	건축	014713	(주)꿈꾸는집	진석산	경기	2020-08-07(2020-09-01)
23	건축	013009	엔에이치건설(주)	노재청	충북	2020-08-27(2020-09-02)
24	건축	014742	(주)아이비종합건설	강용국 정서연	경기	2020-08-28(2020-09-03)
25	건축	014746	거성건설(주)	류기정	경기	2020-09-03(2020-09-11)
26	건축	014749	일선종합건설(주)	김현수	인천	2020-09-07(2020-09-16)
27	건축	014724	(주)다함종합건설	권재현	경기	2020-08-26(2020-09-25)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주요 업무 소개

회원과 함께하는 시회, 회원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주는 시회가 되기 위해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회원사의 충실한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업무를 수행합니다

- 건설업의 신규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내용 확인(심사)
- 건설업의 양도와 법인합병 및 상속신고의 접수·신고 내용 확인(심사)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 접수·확인 기재
- 건설공사 실적신고 수리
- 시공능력평가 및 등록수첩 기재
-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 등록수첩 기재
- 건설공사 도급하한 등록수첩 기재
- 국토교통부장관 지시에 따른 등록기준 실태조사
-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 건설관련 제도개선과 법령 상담도 서울특별시회가 앞장섭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
- 노동관계법령, 하도급관계법령
- 건설기술관리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
- 민자SOC 관계법령, 주택관계법령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 회원사에게 다양한 편익을 드립니다

- 회원사 업무 지도 및 상담
- 중소기업업체 수주 영역 확대 도모
- 건설업 신규등록 업무 지원
- 조달청,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 각급 발주관서 입찰 및 계약 업무 지원
- 각종 민원서류 발급 (PQ 및 적격심사, 자기공사실적 증명서, 경력임원사실 확인서 등)

⚙️ 합리적인 건설업 경영을 위해 도움을 드립니다

- 건설업 경영혁신을 위한 세미나 및 자료제작 배부
- 최신 경영기법, 공사원가 절감을 위한 교육
- 계약제도, 건설산업기본법령 실무해설, 건설공사 실적신고요령 강습회
- 건설현장 안전관리 교육, 기술안전관련 제도 강습회
-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재해예방 교육
- 공사발주정보 수집과 안내

⚙️ 각종 도서와 자료를 발간해 배부합니다

- 각종 법령집 및 참고자료 (회원명부, 건설관련법령집, 거래가격지, 건설업 경영분석, 통계연보, 건설수첩, 건설공사 원가분석, 건설기술상 수상 공법) 등 연 50여 종
- 건설현장 안전관리 교육, 기술안전관련 제도 강습회 자료
- 건설경영관리 및 정보화 세미나 자료

종합건설업 기재사항(상호,대표자,소재지) 변경시 구비서류

공 통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법인 또는 사용인감 도장
상호, 명칭	법 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개 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법 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임원명단 작성(별지) - 대표자 주민번호, 등록기준지(본적지) ※ 변경된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등록기준지 명시 (지자체 신원조회 활용)
	개 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원명단 작성(별지) - 대표자 주민번호, 등록기준지(본적지) ※ 변경된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등록기준지 명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영업 소재지 (전입지에서 신고)	법 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개 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 통	사무실위치도, 사무실평면도(면적표시) 및 사무실 내·외부사진
	자기소유	건물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축물대장
	임대차 전, 월세	건물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임차보증금온라인입금확인증
	책임대차 (전대)	건물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책임대계약서, 건물주의 책임대동의서(인감날인), 건물주인감증명서, 임차보증금온라인입금확인증
지방전입	지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서울-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다른 서류는 위와 동일함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 인	법인등록번호 변경 증명서류
	개 인	주민등록번호 변경 증명서류
국적 또는 소속국가 변경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기재사항 변경신고는 **변경 연월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30일 경과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원사 무료 상담서비스 안내

- 상담방법 : 우리사회 사전신청 후 방문 또는 전화상담
※ 신청서식은 우리사회 홈페이지(www.scak.or.kr-자료/통계-건설서식-민원서식/기타)
- 문의 : 건설정책실 (02-3218-9117, pjingong@cak.or.kr)
- 법률상담 <변호사>

법률고문	박찬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와이케이	
위촉기간	'20.1.1~'20.12.31	
비고	전직 부장판사	
프로필	-서울대 정치학과('79), 서울대 법과대학원('82) -건국대 행정대학원, 주거환경정비사업 전문가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7기 수료 -제12기 사법연수원 수료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북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등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건설전문부) -성남시 수정구 선거관리위원장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제45회 사법시험 3차 시험위원 -서울 서초구 선거관리위원장 -서울대 정치학과 법조모임 회장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중신이사 -제6회 변호사 시험 출제위원

법률고문	김수형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위촉기간	'20.2.1~'21.1.31	
비고	전직 부장판사	
프로필	-서울대 법학과('79), 서울대 법과대학원('82) -서울대 법학박사 과정 수료('03) -제11기 사법연수원 수료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민사법원, 서울형사지법 등 판사 -부산고법, 서울고법 등 부장판사 -스탠포드 로스쿨 객원연구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률고문	이득홍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담박	
위촉기간	'20.6.1~'21.5.31	
프로필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등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부장검사 등	-제44대 대전지방 검찰청 서산지청 지청장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제10대 서울북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제39대 법무연수원 원장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CAK 회원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업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회원가입 일자
건축	014666	(주)에스씨비이종합건설	김성준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704호(문정동)	2020-07-03
건축	014701	(주)유일기업	장성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4-13, 5층(대치동,포스타빌딩)	2020-07-03
건축	014710	(주)천일건설	황기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17길 113, 2층(서초동,정빌딩)	2020-07-07
건축	014688	핀테크종합건설(주)	김보성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198, 25동 212-(구로동)	2020-07-15
건축	014693	(주)이산종합건설	김원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응암로 16, 4층(북가좌동)	2020-07-15
건축	014712	(주)이산종합건설	박상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30, 1102호-1(양평동3가,에이스하이테크시티3)	2020-07-15
건축	014671	골드종합건설(주)	조완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6길 42, 202호(가락동, 쌍용노블레스)	2020-07-16
건축	014715	(주)와이디인터내셔널	김동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동관 1606호(역삼동,한신인터밸리24빌딩)	2020-07-16
건축	014717	(주)유원종합건설	추정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1-24, 1012호(가양동,한화비즈메트로2차)	2020-07-17
건축	014718	옥석종합건설(주)	김포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92, 2층(이문동)	2020-07-17
건축	014720	(주)새서울종합건설	고성철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4라길 7, 지하층(대방동)	2020-07-17
건축	014394	(주)동아건설	유대환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비동 709호(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2020-07-21
건축	014699	(주)지원하우스	허현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2길 24, 지하101호(상월곡동, 화인하우스)	2020-07-21
건축	014722	삼우세너지건설(주)	윤석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향대로 194, 910호(마곡동)	2020-08-03
건축	014329	주민산업건설(주)	김근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이문로 40, 3층(이문동)	2020-08-04

업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회원가입 일자
건축	014705	(주)퍼스트종합건설	김은영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99길 48, 2층(수유동)	2020-08-10
건축	014730	(주)피아크건설	차기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34길 16, 4층(도곡동)	2020-08-13
건축	014735	(주)성하디자인건설	허광철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41나길 14, 101호(쌍문동)	2020-08-13
건축	014725	(주)리움피앤씨	이동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235, 3층(방이동,오뚜존빌딩)	2020-08-19
토목	010610	일성종합건설(주)	오형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1311호(문래동6가,에이스하이테크시티2)	2020-08-19
건축	014719	(주)티제이종합건설	최영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207, 3층(방학동)	2020-08-25
건축	014721	(주)산하디앤씨	김성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41, 10층(서초동,세원빌딩)	2020-09-01
건축	014741	효국종합건설(주)	안원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0길 6, 5층(양재동,화인빌딩)	2020-09-01
건축	014744	동보종합건설(주)	신승훈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164, 3층 305호(오류동,대일빌딩)	2020-09-01
건축	014750	(주)대승아키종합건설	최승철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3길 91, 201호(방배동)	2020-09-10
건축	014729	비에스에이치에스(주)	이희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16가길 29(후암동)	2020-09-10
건축	014740	(주)건휘건설	백인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52길 9, 4층(신사동)	2020-09-11
건축	014754	(주)다원아이디앤씨	백승천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57(서초동)	2020-09-15
건축	014755	(주)유진건설	김현철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24, 804호(구로동,벽산디지털밸리1차)	2020-09-15
건축	013626	에이치아이건설(주)	정혜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86, 3층(서초동, 계산빌딩)	2020-09-22
건축	014758	(주)제일기획	유정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2(한남동)	2020-09-24



앞선 생각,
정책 중심,
함께하는
서울시 건설협회